

부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가단3136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7. 9.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C에게 3,260,844원 및 그 중 3,021,277원에 대한 2003.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판결금 채권(이 법원 2003가소709752)이 있었던 사실, 위 채권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차례로 거쳐 2018. 4. 5.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원고는 2019. 4. 19.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 H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7. 9. 9.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C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상속을 한 사실, C와 피고는 2017.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사실, 당시 C는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9. 2. 8.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 C는 위와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원고가 자신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위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는 과정에서 C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 2) 피고는 C에게 위 판결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 3) 원고는 피고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나. 판단

- 1) 집행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2019. 4. 19.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채권양도 통지가 모두 C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 3)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C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외 2필지 제2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41.29㎡

2층 42.64㎡

3층 42.64㎡

4층 42.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
| 1. 부산광역시 중구 | <input type="text"/> | 대 | 24.1㎡ |
| 2. 부산광역시 중구 | | 대 | 33.1㎡ |
| 3. 부산광역시 중구 | | 대 | 0.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4.50㎡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579000분의 14475

